

중앙도서관 자료선정 지침

■ 제정: 2009년 3월 10일

■ 개정: 2013년 3월 4일

2016년 11월 24일

2017년 12월 3일

2019년 8월 30일

■ 관리부서: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본교 도서관의 자료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장서개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 선정 기준) ① 국내 자료의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본교에 설치되어있는 학과(부) 및 전공에 관련된 주제 분야의 학술자료는 모두 선정한다.
 2. 교과목 수강에 필요하거나 교원이 신청하는 도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국내 대학 출판부의 출판물은 가급적 수집한다. 다만, 강의도서(교과서, 실험서 등)는 제외한다.
 4. 권위 있는 간행물 윤리위원회 등 공공단체가 추천한 도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고전명작이 새로 번역되거나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경우에는 중복 선정한다.
 6. 참고자료 즉, 각종 통계, 연감, 백과사전, 도록, 명감 등은 최신자료로 선정한다.
 7. 권위 있는 서평지에 논평된 베스트셀러는 우선 선정한다. 다만 무협소설, SF 및 판타지, 로맨스, 인터넷 소설 등의 장르문학과 무명인의 에세이, 만화책은 가능한 실물 수서를 통해 내용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8. 국내 시집의 경우 저명한 시인이거나 출판사의 것과 인지도가 높고 작품성이 인정된 작가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9. 기본도서와 참고도서는 서평, 서지, 목록, 전문도서 및 학술잡지 속의 인용문헌, 신문 및 잡지 속의 서평 등의 선정도구를 참고하여 수집한다.
 10. 정부기관과 학술연구기관의 간행물은 가급적 모두 선정한다.
 11. 해당 분야의 도서가 중복되는 경우 최근 발행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② 국외 자료의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는 제1항과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언어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외의 언어로 된 자료는 검토 후 선정한다.
1. 교원의 신청도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초판본으로 소장가치가 있는 도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③ 비도서 자료의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교과목 운용에 필요한 비도서 자료는 매체에 상관없이 선정하되,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선정한다.
 2. 최신기술을 반영한 매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악보의 경우 총보와 파트보를 모두 수집하며 대중가요의 악보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4. 영상자료의 경우 강의나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한 경우와 각종 영화제 수상작, 새로운 기법이나 장르로 대표되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한다.



5. 녹음자료의 경우 가곡, 클래식, 민요, 국악 등의 음악자료, 학술 강연의 녹음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대중가요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6. 지도는 권위 있는 출판사의 지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축적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선정된 자료가 새로 출판된 경우 선정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신판을 계속 선정할 수 있다
- ⑤ 도서는 1권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요구도서
 2. 본교 교수의 저작물
 3. 권위 있는 기관의 추천도서
 4. 교과목 관련 지정도서, 학술도서
 5. 테마 코너를 비롯한 도서관 전시 및 행사지원 제반 도서
 6. 기타 소장가치를 고려한 도서 등

제3조 (선정제외자료) 대학 수준 이상의 학술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며, 기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선정한다.

- ① 아동도서, 초중고생의 학습참고서, 개인용 수험서(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용 문제집, TOEIC · TOEFL과 같은 어학학습서 등), 만화, 외설물, 학위논문 등은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학술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선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고가의 전집류, 고가의 외국서적은 자료의주제와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중고서적은 선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가 절판되어 선정이 어려운 경우 선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4조 (희망도서 신청 상한제) ① 이용자들의 희망도서 신청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집행하고 특정 주제 및 개인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지양하기 위해 개인별 희망도서 신청 상한 기준을 둔다.

- ② 각 신분별 희망도서 연간 구입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 연간 100만원
 2. 석·박사 과정생 및 연구생 : 연간 40만원
 3. 시간강사, 조교, 연구원 : 연간 40만원
 4. 학부생 및 휴학생 : 연간 20만원
 5. 졸업생 및 기타 이용자: 심사 후 제한적으로 정함
- ③ 연간구입상한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자료의 주제와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구입 또는 보류하며, 보류된 자료는 연말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선정위원회 구성) ① 자료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선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도서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 당연직이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단과대학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자료선정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자료의 선정, 구입 및 수집에 관한 사항
- ② 기타 자료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자료선정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 위원회를 갖는다.

제8조 (기타)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